

CDM사업 관련 Q&A

최근에 CDM사업추진과 관련하여 CDM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을 종합하여 Q&A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hga@kemco.or.kr/☎ 031-260-4548)로 연락주십시오.

1. Unilateral CDM이 무엇인가요?

☞ Unilateral CDM은 국제적으로 정의된 경우가 없어서, 사람들마다 unilateral CDM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UNEP의 「CDM사업 정보 및 가이드북」의 정의에 따르면, “개도국(Non-Annex I국가)이 CDM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개도국이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팔거나 이월하는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UNEP, CDM information and Guidebook). 그러나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Unilateral CDM사업이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2. Annex I국가의 개입 없이,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국내 CDM사업을 발굴하여 UN에 "등록(REGISTRATION)"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CDM사업 등록(registration)단계에 필요한 서류에 선진국(Annex I국가)과 개도국의 국가승인서가 포함되었으나, 제18차 CDM집행위원회('05.2)회의에서 CDM사업 등록단계에서는 개도국의 CDM사업 국가승인서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DM집행위원회는 CER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단계에서는 선진국의 승인서를 포함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CDM사업 단계별 제출서류

절차	CDM 집행위원회 제출서류 (제18차 EB회의 이전)	CDM 집행위원회 제출서류 (제18차 EB회의 이전)
CDM사업자의 CDM사업 PDD계획서 작성 ↓		
CDM 인증기관의 타당성 확인 및 등록 ↓	1. CDM사업 등록서 2. CDM사업계획서 3. 타당성확인 보고서 4. Annex I국가 승인서 5. non-Annex I국가 승인서	1. CDM사업 등록서 2. CDM사업계획서 3. 타당성확인 보고서 4. non-Annex I국가 승인서
CDM사업자의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CDM 인증기관의 검증 및 인증 ↓	1. 검증보고서	1. 검증보고서
CER 발급 ↓	1. 인증보고서	1. 인증보고서
CER 계좌이체		1. Annex I국가 승인서

3.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기본적인 CDM사업 요건(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 포함)을 만족하는 CDM사업을 추진하여 CERs을 발급하였을 경우에, 국내 기업이 제2차 의무감축기간까지 CERs을 이월(banking, 移越)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이 향후의 의무감축을 대비하여 CERs보유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제2차 의무감축기간(2013년~2017년)동안에 CDM사업이 의무감축을 이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2차 의무감축기간에 대한 논의(의무대상국, 의무 감축량 및 의무감축량 달성방법 선정 등을 포함)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세부이행방법에 따르면, 제1차 공약기간 내에 폐기 혹은 취소되지 않은 CERs은 선진국 할당량의 최대 2.5%까지 선진국의 후속 공약기간으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보면, CDM사업이 제2차 공약기간내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CDM 레지스트리의 보유계좌(holding account)에 CERs 보유기간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이 CDM사업을 추진하여 CERs이 발급되면, CDM 레지스트리의 보유계좌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발급된 CERs이 보유계좌에 얼마나 머물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어서 이에 대한 CDM집행위원회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4. 우리나라가 다른 개도국(예. 베트남, 중국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면 CDM사업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 다른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도국 CDM사업 승인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CDM집행위원회에 CDM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CDM사업이 추진되어 CERs이 발급되었을 경우, 이 CERs은 CDM 레지스트리의 미결제좌(pending account)에 머물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non-Annex I국가이기 때문에, 발급된 CERs이 우리나라의 계좌로 이동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Annex I국가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CDM사업이 제1차 의무감축기간(2008-2012)이 시작되기 8년 전(2000년)부터 인정된 것을 고려하면, 제2차 의무감축기간(2013-2017)동안을 위해서는 8년 전인 2005년부터 추진된 CDM사업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된 바 없습니다.